

의안번호	2210201
의 퇴 인	박정의원
회 답 일	2025. 8. 20.
추계번호	25B235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0조(재정 지원)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u>전부 또는 일부</u>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제1항)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및 <u>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의 운영</u>	재량규정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u>전부 또는 일부</u>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함(제2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량·의무 규정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거나 <u>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운영</u>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u>전부 또는 일부</u>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함(제3항)	재량·의무 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0조(재정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안 제50조)

- 현행법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자금의 일부를 지원(보조, 융자 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국가 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6,036

구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시·도 재정지원 (법 제50조제2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598,917
시·군·구 재정지원 (법 제50조제3항)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1,106,867

주: 1) 국가의 재정지원은 2024년 기준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 사업자(버스 66개 지자체, 택시 63개 지자체)에 대하여만 이루어졌으며, 동 사업은 해당사업자에게 국비:지방비를 5:5의 비율로 보조하는 사업임

2) 시·도 및 시·군·구의 재정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대상 사업자 및 지원금액 산정방식이 상이함¹⁾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은 운수사업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에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자’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수사업자의 필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현행은 필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터미널사업자를 대상으로 터미널 시설 개선 비용, 터미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의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 참조

1)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시내버스에 대하여는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을 지원하며,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1일 1대당 운송수입이 재정지원기준액(486,098원)보다 적은 업체에 대하여 한도액(23만원) 내에서 차액을 지원하고 있고, 강원도의 경우 벽지노선 운행사업자의 경우 총 사업비의 15% 이내 지원, 터미널사업자의 경우 환경개선 사업의 24% 이내 지원, 공공형버스사업자의 경우 총 사업비의 15% 이내 지원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지원을 하는 대상 사업자 및 지원금액 산정방식이 상이함

- 개정안에 따른 소요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자의 수,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 포함)에 대하여 추가 및 확대되는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판단기준 및 관련 통계가 부재하고,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추가·확대 등 관련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의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구체적인 사업 내용	2023년	2024년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사업 목적) 터미널 서비스 지속 및 관리 -(주요 내용) 청결 관리, 대합실 유지 보수, 보안 및 경비	247	253	274
세종시 소계		247	253	274
이천시	-(사업 목적) 이천 종합터미널 시설개선 지원 -(주요 내용) 노후터미널 시설개선 지원(승강장의자, 화장실 등)	10	-	-
안성시	-(사업 목적) 안성종합터미널 시설개선 지원 -(주요 내용) 터미널 차단기 설치 지원	18	-	-
포천시	-(사업 목적) 포천, 일동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 (25년엔 일동시외버스터미널만 지원) -(주요 내용) 터미널 차단기 설치 지원	8	8	4
경기도 소계		36	8	4
강원특별자치도	-(사업 목적) 노후화된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주요 내용) 대합실·매표실 등 시설개선 등	118	74	54
강릉시	-(사업 목적) 노후화된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주요 내용) 대합실·매표실 등 시설개선 등	159	130	-
동해시	-(사업 목적)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주요 내용) 노후 터미널 화장실 시설개선	15	-	-
속초시	-(사업 목적) 여객터미널 시설개선 -(주요 내용) 버스승강장 포장공사 등	-	-	17
삼척시	-(사업 목적)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운영비 지원 -(주요 내용) 인건비 및 경비 지원	-	24	60
평창군	-(사업 목적)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운영비 지원 -(주요 내용) 인건비, 운영비, 시설개선 등 지원	182	224	380
양구군	-(사업 목적) 터미널 경영개선 지원 -(주요 내용) 경영개선지원 사업비 지원	10	10	10
인제군	-(사업 목적) 여객터미널 시설개선 및 플랫폼 개선 -(주요 내용) 대합실 리모델링, 플랫폼 포장 등	-	317	-
영월군	-(사업 목적) 시외버스터미널의 원활한 운영 -(주요 내용) · 운영지원: 인건비, 터미널 사용료 · 간접지원: 화장실 청소용역, 화장실 수도·비상벨 전기요금, 노후 시설 보수	78	98	98
철원군	-(사업 목적) 교통약자 등 모든 이용객의 교통 접근성 보장 및 시외버스터미널 창구 인력 등 운영 효율성 제고 -(주요 내용) 무인발권시스템(키오스크) 2대 설치	-	-	26
강원도 소계		562	877	645

지자체명	구체적인 사업 내용	2023년	2024년	2025년
충주시	-(사업 목적) 터미널 대합실 환경개선 -(주요 내용) 대합실 출입문·천정·바닥 보수, 냉난방 공조시설 보수, 장애인 점자블록 부분 이설	200	-	-
제천시	-(사업 목적) 터미널 시설개선 -(주요 내용) 도장공사, 승차홈 정비 등 시설개선	32	-	32
보은군	-(사업 목적) 공용정류장 운영 보조 -(주요 내용) 보은, 속리산 터미널 및 간이매표소 운영	64	64	70
괴산군	-(사업 목적) 시외버스터미널 지원 -(주요 내용) 터미널 근무자 인건비 지원	-	-	20
음성군	-(사업 목적) 시외버스터미널 인건비 지원 -(주요 내용) 매표직원 인건비 지원	50	50	75
충북도 소계		346	114	197
충청남도	-(사업 목적)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쾌적한 터미널 환경 조성 -(주요 내용) 대합실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 교체 등	317	345	20
공주시	-(사업 목적)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주요 내용) 대합실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 교체 등 승 차홈 및 도착홈 행선판 교체 등	105	-	-
당진시	-(위탁운영비) 공영버스터미널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라 적자 발생분, 매표금액 수수료(10%) 보전 -(시설보수비) 건물 및 설비 보수비 시비 100% 사용	542	519	522
금산군	-(사업 목적) 터미널 경영난 해소 -(주요 내용) 운영지원금 지급	100	100	100
부여군	-(사업 목적)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 추진 -(주요 내용) 터미널 대합실 개보수 등	67	95	-
청양군	-(사업 목적) 터미널 운영 부담 일부 해소 및 폐업 방 지를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 -(주요 내용)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	-	18
태안군	-(사업 목적) 태안공영터미널 운영 지원 -(주요 내용) 태안공영터미널 시설 용역, 공사 및 소모 품 지원	318	125	1,062
논산시	-(사업 목적) 터미널 경영 개선을 통한 시민의 대중교 통 이용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주요 내용) 논산 시외버스터미널 필수 근로자(8인) 운영 인건비 지원	161	165	169
충남도 소계		1,610	1,349	1,891
전북도 전주시	-(사업 목적) 여객터미널 시설물 환경정비 -(주요 내용) 천정·바닥 개보수 등	139	192	208
전북도 군산시	-(사업 목적) 먼지역(대야) 공용터미널 적자 운영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영비 보조 -(주요 내용) 매월 1,000천원, 연 12,000천원 지원	12	12	12
전북도 익산시	-(사업 목적) 여객터미널 운영지원 -(주요 내용) 인건비 보조	120	120	160
전북도 정읍시	-(사업 목적) 터미널 환경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 제공 -(주요 내용) 터미널 시설 개선	77	-	-

지자체명	구체적인 사업 내용	2023년	2024년	2025년
전북도 남원시	-(사업 목적) 터미널 운영 안정화에 따른 이용객 편의 제고 -(주요 내용) 냉난방비(공공요금), 화장실 편의용품, 인건비 지원, 청소인력(공공근로)지원	104	111.2	102
전북도 김제시	-(사업 목적) 관내 터미널 운영 지원 -(주요 내용) 터미널 소모품(화장실 물품 등) 지원 및 인건비(매표원) 지원	29	33	33
전북도 완주군	-(사업 목적)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운영비 지원 -(주요 내용) 여객자동차터미널 공공요금 및 화장실 용품 구매 비용 지원	73	139	205
전북도 무주군	-(사업 목적) 공영터미널 정비사업 및 재정지원 -(주요 내용) 터미널 시설 개선 및 운영 인건비, 전기료	167	214	268
전북도 장수군	-(사업 목적) 공용터미널 재정지원을 통한 군민 편의 증진 -(주요 내용) 공용터미널 공공요금 및 인건비 지원	89	89	89
전북도 임실군	-(사업 목적) 공용터미널 재정지원을 통한 군민 편의 증진 -(주요 내용) 공용터미널 시설물 정비	-	-	37
전북도 순창군	-(사업 목적) 터미널 운영지원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 -(주요 내용) 냉·난방비 전기요금 및 인건비 지원	47	34	35
전북도 고창군	-(사업 목적) 쾌적한 여객운수 서비스 제공 -(주요 내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시설 개선	-	35	26
전북도 소계		857	979	1,175
전라도	-(사업 목적) 노후터미널의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안전, 경영 개선 지원 -(주요 내용) 노후된 편의·안전시설 개보수	-	600	600
목포시	-(사업 목적)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주요 내용) 노후된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100	-	-
순천시	-(사업 목적) 터미널 사업자 지원 -(주요 내용) (북부정류소 유지관리) : 터미널 외 간이 정류소 설치 및 공공요금 등 지원 (송광사버스터미널 운영지원) : 공공요금 등 지원	7	11	11
나주시	-(사업 목적)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 지원 -(주요 내용) 터미널 냉·난방비, 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지원	67	64	57
	-(사업 목적)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시설 개선 -(주요 내용) 화장실, 대합실 등 터미널 노후시설 환경 개선 사업	-	-	126
담양군	-(사업 목적) 쾌적한 터미널 환경 조성 -(주요 내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시설 환경개선	-	-	126

지자체명	구체적인 사업 내용	2023년	2024년	2025년
곡성군	-(사업 목적) 버스터미널 지원 -(주요 내용) 화장실 인건비* * 80만원×2명×12월×2개소	19	19	19
	-(사업 목적) 여객터미널의 공공요금지원 -(주요 내용) 공공요금(전기, 수도) 납부 영수증 확인 후 보조금 지급(전액)	6	6	6
	-(사업 목적) 노후터미널의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안전, 경영 개선 지원 -(주요 내용) 위험시설 개선(전기), 노후 고장 발권기 교체지원 등	—	—	58
화순군	-(사업 목적) 화순시외버스터미널 적자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주요 내용) 재정지원금 지급	24	24	5
장흥군	-(사업 목적) 어려운 경영 여건 개선 및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주요 내용) 공영터미널 3개소 일반운영비 지원	20	25	25
	-(사업 목적) 1,000원버스(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터미널 매표수수료 손실금 보전 -(주요 내용) 매표수수료 손실금 지원	400	413	—
무안군	-(사업 목적) 공용버스터미널 유지보수 지원 -(주요 내용) 보행로 증설,도색,차마기둥 H빔 설치 등	36	—	—
	-(사업 목적) 버스터미널 승강장 보수공사(해제) -(주요 내용) 터미널 출입문 및 창호시설 보수	—	22	—
	-(사업 목적)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시설 환경개선 -(주요 내용) 노후 화장실 보수	—	—	25
영광군	-(사업 목적) 터미널 이용객 감소를 겪는 터미널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주요 내용) 냉난방 운영 지원	10	25	25
장성군	-(사업 목적) 전라남도 안전점검 주요 지적사항을 개선 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터미널 환경조성 -(주요 내용) 차단기 및 전선 교체 등	5	—	—
	-(사업 목적)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주요 내용) 매년 분기별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운영보조금 지급(2,400천원/년)	2	2.4	2.4

지자체명	구체적인 사업 내용	2023년	2024년	2025년
완도군	-(사업 목적) 터미널 내 방역 및 환경관리 인부임 보조금 지급 -(주요 내용) 완도 버스터미널 방역 및 환경관리 인부임	18	20	20
	-(사업 목적) 전기, 수도 등 공공운영비 지원 -(주요 내용) 터미널 공공운영비 지원(3개소)	18	18	18
	-(사업 목적) 터미널 내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주요 내용) 완도 공영버스터미널 시설물 보수비	10	-	-
	-(사업 목적) 노후 버스터미널 시설 현대화 -(주요 내용) 버스 전광판 등 LED 간판 교체	-	-	30
전남도 소계		742	1,249	1,153
경상북도	-(사업 목적) 침체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활성화 -(주요 내용) 경영이 악화된 터미널사업자에게 운영비 지원(시군 교부)	150	435	435
포항시	-(사업 목적) 터미널 사업자 지원 -(주요 내용) 연간 운영비의 20% 지원	130	300	304
경주시	-(사업 목적) 터미널 사업자 지원 -(주요 내용) 연간 운영비의 20% 지원	67	210	177
김천시	-(사업 목적) 터미널의 관리비 지원으로 인한 이용객 편의증진 -(주요 내용) 냉난방비 지원, 화장실 청소 및 비품비 지원 등	3	3	3
	-(사업 목적) 터미널의 인건비와 주차 용역비 지원 -(주요 내용) 인건비와 주차 용역비 지원	18	50	44
안동시	-(사업목적) 안동버스터미널 운영 보조 -(주요내용) .중간정차지(안동초, 용상) 운영 보조 .안동터미널 운영 보조	122	70	105
구미시	-(사업 목적) 터미널사업자 지원 -(주요 내용) 연간 운영비의 20% 지원	21	70	63
영주시	-(사업 목적) 터미널사업자 지원 -(주요 내용) 인건비 등 지원	21	63	67
영천시	-(사업 목적) 이용객 감소로 경영 부담을 겪는 버스터미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객 등 시민의 쾌적한 공공서비스 제공 -(주요 내용) 터미널 운영 공공요금, 화장실 관리 및 물품구입, 터미널 유지 및 보수	9	9	9
상주시	-(사업 목적) 공용정류장 손실보전 -(주요 내용) 터미널 운영비 지원	112	63	67

지자체명	구체적인 사업 내용	2023년	2024년	2025년
문경시	-(사업 목적) 지속적인 터미널 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주요 내용) 인건비, 소모품비 등 운영비 지원	16	42	46
경산시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원(경영 및 시설 개보수 등)	-	7	18
의성군	-(사업 목적)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터미널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주요 내용) 운영 보조금 지원	208	168	207
청송군	-터미널사업자 지원	80	100	100
영양군	-버스정류소 운영비 지원	12	12	12
	-(사업 목적)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 -(주요 내용) 터미널 인건비 등 지원	14	42	63
영덕군	-(사업 목적)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운영비 보조 -(주요 내용) 터미널 인건비,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지원	-	28	29
청도군	-(사업 목적) 여객자동차터미널 설비의 확충 개선 및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증진 제고 -(주요 내용) 터미널의 인건비 및 시설물 보수	7	7	7
고령군	-(사업 목적) 여객터미널 재정 건전성 제고 -(주요 내용) 여객터미널 운영 경비 지원	290	200	200
예천군	-(사업 목적) 터미널 운영지원으로 안정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 -(주요 내용) 예천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	93	89	86
봉화군	-(사업 목적)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 -(주요 내용)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비 지원	3	14	16
울진군	-(사업 목적) 터미널 운영지원을 통한 안정적 대중교통 편의 제공 -(주요 내용) 공영터미널 운영비 지원	50	82	82
경북도 소계		1,425	2,063	2,139
진주시	-(사업 목적)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주요 내용) 노후화된 터미널 시설물 보수공사	-	84	80
사천시	-(주요 내용) 터미널 화장실 위생용품(화장지) 지원	4	4	5
	-(사업 목적) 터미널 사업자(곤양 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경영 지속성 유지 -(주요 내용) 곤양터미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12	12	20
	-(사업 목적) 시외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으로 시설개선을 통한 승객 편의 제고 -(주요 내용) 터미널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45	20	45

지자체명	구체적인 사업 내용	2023년	2024년	2025년
밀양시	-(주요 내용) 여객터미널 운영비 지원	-	-	3 (추경예정)
창녕군	-(사업 목적)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 적자 우회보전 -(주요 내용) 창녕군 경유 시외버스 외벽에 외부광고 게재하여 시외버스 업체 우회 보조	-	-	50
산청군	-(사업 목적) 버스 이용객 감소에 따른 버스터미널 손 실 발생액 지원 -(주요 내용) 운영 손실금 지원	30	30	35
합천군	-(사업 목적) 군민들의 지속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을 위해 손실보상금 지원 -(주요 내용)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48	60	60
경남도 소계		139	210	298
합 계		5,964	7,102	7,776